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보 수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2026.7.1.) 및 「지방자치법」 개정·시행(2026.7.1.)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연봉액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지급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통합특별시의 장 및 교육감과 동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하는 연봉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지사 및 부시장 연봉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부지사 및 부시장의 연봉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적용대상공무원	구분
1. 정무직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2.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3.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정책적으로 직접 보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보좌하는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4. 제4조제4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5.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봉급표가 준용되는 공무원 중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에 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	
7.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별표 1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154,932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50,467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31,604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21,337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12,531

비고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 및 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50,467천원,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21,337천원,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12,531천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의 연봉은 121,337천원으로 한다.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21,337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12,531천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남부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31,604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21,337천원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12,531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04,933천원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법 제205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봉은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